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작성 기준일 2025년 09월 25일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10월 02일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20년 2월 10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의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최초 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합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ESG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용어정리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09.25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0487]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원본 손실 위험, 시장 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국가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자산배분 위험, ESG 집합투자기구 투자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성장 및 현금흐름 등 재무적 요인은 물론, 사회적 책임 및 친환경 경영 등의 비재무적 ESG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기한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이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ESG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점이며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반한 소비자, 투자자, 주주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회복성을 창출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2) 일관된 수익률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기업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3) 투자 의사 결정에 ESG 통합 평가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전통적인 재무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기회와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리스크를 조정하고, 이로써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창출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4) 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과 활동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재무적 투자기준과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는 해외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과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MSCI The World Index(USD)*60%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35% + 콜금리*5%**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0% 이내	1.0550	0.5000	0.8600	1.6087	262	430	603	966	1,987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1)	없음	1.5550	1.0000	1.2100	2.1067	214	434	660	1,132	2,432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0% 이내	0.8050	0.2500	0.5800	1.3582	188	330	478	790	1,672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없음	1.0550	0.5000	0.7500	1.6089	164	333	508	875	1,906

투자비용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 A1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11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5455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4.09.01 ~ 2025.08.31	2023.09.01 ~ 2025.08.31	2022.09.01 ~ 2025.08.31	2020.09.01 ~ 2025.08.31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4.91	7.17	5.08	-	2.90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5.17	7.42	5.33	-	3.16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C1)	4.39	6.63	4.56	-	2.39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4.90	7.15	5.07	-	2.89
비교지수(%)	12.08	14.30	12.64	-	9.25
수익률 변동성(%)	7.95	7.97	8.70	-	9.91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주1) 비교지수 : MSCI The World Index(USD)*60%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35% + 콜금리*5%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7)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2025.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ESG 펀드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전문 인력

박정호	1977	책임운영역	38개	5,220억원	4.72%	8.94%	6.44%	10.22%	13년 5개월	5년 2개월
-----	------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펀드솔루션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영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영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영역 부재시 등의 경우 펀드솔루션팀내 다른 운영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해외투자자산은 주로 해외투자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위험관리

		<p>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 등의 외국통화로 거래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외국통화(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 등)로 거래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등의 경우 한국 원화 대비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한 부분환헤지(외화표시자산 평가 금액의 85% 수준)를 실행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통화와 동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 비록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해 한국 원화 대비 부분환헤지가 실행되더라도, 동 해외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통화와 기준가격 표시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 (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용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환헤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자산배분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ESG 집합투자기구 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ESG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략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이하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ESG 평가결과 의 변동 혹은 환경,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불리한 영향 등으로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p> <p>※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매입방법</p>		<p>가. 17시 이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D+3)의 기준가격을 적용</p>
<p>환매방법</p>		<p>가. 17시 이전: 제5영업일(D+4)의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D+7)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6영업일(D+5)의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D+8)에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 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과세	<p>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집(판매)기간	2020년 2월 10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모집(매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10월 02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무권유저비 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D04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D0488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D048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D04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D04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D0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D0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D0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D0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D0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D04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D0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D04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D05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D05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종류S-P)	D0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종류S-R)	D085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2020년 2월 10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환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D0487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D0488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D048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D04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D04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D0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D0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D0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D04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D04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D04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D04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D04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D05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D05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종류S-P)	D0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종류S-R)	D085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0.09.17	최초 설정
2020.11.04	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김성훈(책임운용역),이유진(부책임운용역) 변경후:김성훈(책임운용역)
2021.02.05	사명 변경에 따른 변경 변경전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 변경후 : 신한자산운용(주)
2021.03.26	1.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전: 김성훈(책임운용역) 변경후: 박정호(책임운용역),이건호(부책임운용역)
2021.04.13	운용전문인력변경 변경전: 박정호(책임운용역), 이건호(부책임운용역) 변경후: 박정호(책임운용역)
2023.10.05	위험등급기준변경(투자대상→변동성)
2024.02.0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ESG 펀드의 중요정보에 대한 내용 추가)
2024.11.0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2025.10.02	위험등급 변경(3등급→4등급)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	-------

주1)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은 최초 설정일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5.08.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 년수	ESG 펀드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정호	1977	책임운용역	38개	5,220억원	4.72%	8.94%	6.44%	10.22%	13년 5개월	5년 2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Cooper Union, Engineering 학사 - New York University, MBA - Capco, Senior Consultant (01.02-07.06) - 삼성화재 일반계정운용파트 해외주식 매니저 (10.02-11.12) - 삼성화재 일반계정운용파트 해외채권 매니저 (12.01-15.03) - Willis Towers Watson Investments Korea 부장 (15.10-17.05)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해외재간접운용팀 팀장 (17.05-20.01)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20.01-20.12)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솔루션팀 팀장(21.01-21.01) - 신한자산운용 펀드솔루션팀 팀장(21.01-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펀드솔루션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펀드솔루션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025.08.31. 현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r)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r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R)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 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 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 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 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 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성장 및 현금흐름 등 재무적 요인은 물론, 사회적 책임 및 친환경 경영 등의 비재무적 ESG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기한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이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ESG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점이며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반한 소비자, 투자자, 주주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회복성을 창출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 (2) 일관된 수익률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기업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3) 투자 의사 결정에 ESG 통합 평가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전통적인 재무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기회와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리스크를 조정하고, 이로써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창출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4) 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과 활동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ESG 측면에서 고성과를 달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낮은 단기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60% 수준, 해외 단기채권형 펀드 35% 수준으로 자산별 비중을 부여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5.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어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외파생상품
8.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9. 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p>(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p>
1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p>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동일종목 투자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p>다만,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 	

집합투자증권	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p><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 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재무적 투자기준과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는 해외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과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1. ESG 투자란?

재무적인 투자기준과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전략으로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주주가치의 극대화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입니다.

지속가능투자 전략 (예시)

전략	설명
① 네거티브 스크리닝	ESG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목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식
② ESG 통합	종목선별 등 투자 시에 전통적 재무분석 기법에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분석을 추가하는 방식
③ 경영관리 주주활동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정책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
④ 규범 기반 스크리닝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나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목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식
⑤ 파지티브 스크리닝	ESG 분야의 가장 우수한 종목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
⑥ 지속가능한 투자테마선별	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지속 가능한 농업 등 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⑦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정집단에 대한 투자나, 환경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는 공익적 투자

2.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1) 주식형 : Core-Satellite 전략으로, Core는 지속가능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로 구성하고, Satellite는 ESG 범주 내 상황에 따라 관련 Theme을 추구하는 펀드로 구성하여 알파 추구하고자 합니다.

2) 채권형 : 짧은 듀레이션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선진국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3.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 투자신탁은 체계적인 시장 전망에 근거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선별하여 투자하며, 시장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 및 수시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장변화 또는 시장전망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월간)
- 펀드 정성평가 (스타일 변화, 운용역 변경 등)와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 (분기)
- 펀드 설정/환매에 따른 조정, 위험한도/컴플라이언스 위반 방지를 위한 조정(수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시]

※ 시장과 투자대상 펀드 회사의 상황 및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하기 예시 펀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19년10월31일)

<table border="1"> <tr><td>펀드명</td><td>BNP Paribas Funds Disruptive Technology</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BNP Paribas Asset Management Luxembourg</td></tr> <tr><td>설립일</td><td>2013년 05월 17일</td></tr> <tr><td>운용규모</td><td>8.3억 유로</td></tr> <tr><td>투자전략 및 특징</td><td>-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채택 기업이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장성을 보인다는 믿음,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거나,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술혁신 테마 발굴, 기술 혁신을 테크 주식이지만, 외부평가기관과 내부고유평가 둘을 사용하여 ESG 팩터 고려</td></tr> </table>	펀드명	BNP Paribas Funds Disruptive Technology	집합투자업자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Luxembourg	설립일	2013년 05월 17일	운용규모	8.3억 유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채택 기업이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장성을 보인다는 믿음,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거나,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술혁신 테마 발굴, 기술 혁신을 테크 주식이지만, 외부평가기관과 내부고유평가 둘을 사용하여 ESG 팩터 고려	<table border="1"> <tr><td>펀드명</td><td>Liontrust Sustainable Future Global Growth Fund</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Liontrust Fund Partners LLP</td></tr> <tr><td>설립일</td><td>2001년 02월 19일</td></tr> <tr><td>운용규모</td><td>4.5억 파운드</td></tr> <tr><td>투자전략 및 특징</td><td>-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지역 가능한 기업들이 더 나은 성장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 장기 성장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심화될 정책, 산업 펀더멘털 리서치와 더불어 ESG 분석 방식 적용</td></tr> </table>	펀드명	Liontrust Sustainable Future Global Growth Fund	집합투자업자	Liontrust Fund Partners LLP	설립일	2001년 02월 19일	운용규모	4.5억 파운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지역 가능한 기업들이 더 나은 성장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 장기 성장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심화될 정책, 산업 펀더멘털 리서치와 더불어 ESG 분석 방식 적용
펀드명	BNP Paribas Funds Disruptive Technology																				
집합투자업자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Luxembourg																				
설립일	2013년 05월 17일																				
운용규모	8.3억 유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채택 기업이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장성을 보인다는 믿음,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거나,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술혁신 테마 발굴, 기술 혁신을 테크 주식이지만, 외부평가기관과 내부고유평가 둘을 사용하여 ESG 팩터 고려																				
펀드명	Liontrust Sustainable Future Global Growth Fund																				
집합투자업자	Liontrust Fund Partners LLP																				
설립일	2001년 02월 19일																				
운용규모	4.5억 파운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지역 가능한 기업들이 더 나은 성장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 장기 성장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심화될 정책, 산업 펀더멘털 리서치와 더불어 ESG 분석 방식 적용																				
<table border="1"> <tr><td>펀드명</td><td>BMO Investments Lux I Fund - BMO Responsible Global Equity Fund</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BMO Asset Management Limited</td></tr> <tr><td>설립일</td><td>2005년 12월 12일</td></tr> <tr><td>운용규모</td><td>6.4억 유로</td></tr> <tr><td>투자전략 및 특징</td><td>-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투자자로서 ESG관점에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철학, 운용팀, 책임투자팀 (ESG분석), 자문위원회 (ESG 환경 변화 아이디어 제공)의 협업, 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적 참여, 제품과 활동 변화 촉구</td></tr> </table>	펀드명	BMO Investments Lux I Fund - BMO Responsible Global Equity Fund	집합투자업자	BMO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2005년 12월 12일	운용규모	6.4억 유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투자자로서 ESG관점에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철학, 운용팀, 책임투자팀 (ESG분석), 자문위원회 (ESG 환경 변화 아이디어 제공)의 협업, 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적 참여, 제품과 활동 변화 촉구	<table border="1"> <tr><td>펀드명</td><td>PIMCO GIS Low Average Duration Fund</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imited</td></tr> <tr><td>설립일</td><td>2002년 12월 05일</td></tr> <tr><td>운용규모</td><td>12억 달러</td></tr> <tr><td>투자전략 및 특징</td><td>- UCITs - 주요전략: 미국 단기채권형 펀드 - 특징: 자산의 2/3이상을 1~3년 듀레이션의 채권에 투자하여 최대 수익률 추구, Baa 등급 이하 10%, EMI정 15%, USD외 통화 20% 투자 가능</td></tr> </table>	펀드명	PIMCO GIS Low Average Duration Fund	집합투자업자	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imited	설립일	2002년 12월 05일	운용규모	12억 달러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미국 단기채권형 펀드 - 특징: 자산의 2/3이상을 1~3년 듀레이션의 채권에 투자하여 최대 수익률 추구, Baa 등급 이하 10%, EMI정 15%, USD외 통화 20% 투자 가능
펀드명	BMO Investments Lux I Fund - BMO Responsible Global Equity Fund																				
집합투자업자	BMO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2005년 12월 12일																				
운용규모	6.4억 유로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글로벌 주식형 펀드 - 특징: 투자자로서 ESG관점에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철학, 운용팀, 책임투자팀 (ESG분석), 자문위원회 (ESG 환경 변화 아이디어 제공)의 협업, 주주권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적 참여, 제품과 활동 변화 촉구																				
펀드명	PIMCO GIS Low Average Duration Fund																				
집합투자업자	PIMCO Global Advisors (Ireland) Limited																				
설립일	2002년 12월 05일																				
운용규모	12억 달러																				
투자전략 및 특징	- UCITs - 주요전략: 미국 단기채권형 펀드 - 특징: 자산의 2/3이상을 1~3년 듀레이션의 채권에 투자하여 최대 수익률 추구, Baa 등급 이하 10%, EMI정 15%, USD외 통화 20% 투자 가능																				

※ 최초설립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 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투자전략과 ESG요소와의 연관성

하위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 종목 선정시 UN Global Compact* 등에서 제정한 국제적 원칙**, 기준에 근거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 및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등을 배제함으로써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가치평가에 ESG 평가 요소를 높은 비중으로 추가합니다. ESG 평가 요소의 예시로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Scope 단계를 측정하는 탄소 강도 (Carbon Intensity)나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탄소경영전략, 기업 문화 다양성 및 포용성 (DEI) 등이 있으며 각 하위 집합투자증권이 식별하는 주요 ESG 요인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G 평가는 하위 집합투자업자 내 별도로 설립된 지속 가능 투자팀 혹은 리서치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 Vigeo Eiris와 같은 독립적인 ESG 리서치센터를 이용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도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이니셔티브인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 서포터즈에 가입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선제 대응하거나, 책임투자원칙(PRI)을 선언하는 등 ESG 경영 강화를 지지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선호합니다.

* UN Global Compact :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10 Principals)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 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 UN Global Compact 10 Principal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MNE Guidelines 등

(4)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주요 위험관리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관리는 '(5)환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엄격한 기준에 따른 투자유니버스(투자후보군)관리
- 자산군별 변동성 및 상관관계 모니터링
- 자산군별 수익률 및 위험점검
- 통합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조정성과 점검

*이상의 위험관리전략은 시장상황의 변화 및 투자기법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5)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 등의 외국통화로 거래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외국통화(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 등)로 거래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등의 경우 한국 원화 대비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한 부분환헤지(외화표시자산 평가 금액의 85% 수준)를 실행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해외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통화와 동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 비록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해 한국 원화 대비 부분환헤지가 실행되더라도, 동 해외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통화와 기준가격 표시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고(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환헤지의 장단점</p>	<p>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p>
<p>환헤지의 비용</p>	<p>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p>
<p>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p>	<p>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p>

(6)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The World Index(USD)*60%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35% + 콜금리*5%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과 해외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므로 해당 지역 주식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MSCI The World를 비교지수로 적용하고, 듀레이션이 짧은 글로벌 채권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Yr을 비교지수로 적용하며,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콜금리를 비교지수로 적용합니다.

- MSCI The World Index(USD)

MSCI the World index는 23개의 선진 시장 국가에서 대규모 및 중형 주가 실적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글로벌 국가 지수입니다.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r 인덱스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에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1~3년 만기인 글로벌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동 펀드의 비교지수는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동 펀드는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에 대하여 85% 의 목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기에, 비교지수는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에 대하여 85%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펀드의 환헤지 전략은 항상 85%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응하여 평균적으로 85%의 환헤지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에 대하여 85%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비교지수로 적용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헤지 실행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파운드화(GBP)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펀드의 비교지수로 설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교지수의 성과와 펀드의 실제 성과의 차이에는 비교지수의 환헤지 비율과 실제 환헤지 비율의 차이로 인한 성과 차이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각각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이머징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

다른 위험	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p>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 대비 한국 원화의 변동에 대해 부분환헤지(외화표시자산 평가 금액의 85% 수준)를 실행합니다.</p> <p>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비용 대비 효용이 줄어든다 고(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 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부분환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에 의해 부분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헤지하는 금액: 이 금액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환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2.헤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헤지 비용 3.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채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한 경우 4.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선물환거래 상대방의 부도 <p>환 헤지는 펀드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환율의 변동방향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수반합니다. 환 헤지 수단이 없는 경우 환율의 불리한 변동은 펀드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고 거래상대방위험(장외거래의 경우)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제반 약정에 의거하여 환 헤지 관련 거래상대방의 정산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1)보유 유동자금, 2) 보유 자산의 매각의 방법으로 정산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환 헤지 관련 손실은 전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편, 이 투자신탁이 자금의 mismatch, 보유자산의 낮은 유동성 등의 사유로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이와 관련된 손실은 전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과세위험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시장위험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정부의 조치,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과 유동성 감소를 초래하여,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또는 재정적 불안정성, 사회 불안 및 테러리즘 역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위험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

재간접 투자위험	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 구조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펀드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매도 가격이 결정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환매분 외 기타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 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률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경제, 시장 및 관할권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국내외 금융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또는 경제성장률,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미국 및 유럽, 아시아, 이머징 국가 내외 정치환경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가 및 관할권(jurisdiction)의 차이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산의 회수율, 회수기간 등 본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요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운용회사는 규제 제한 규정이나 투자 정책 및 투자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제 또는 법의 변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투자 방침과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본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자산양도자, 중개인 혹은 딜러 등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약정이나 거래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 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주로 해외투자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국가위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스프레드 위험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규 차입자산의 공급증가, 발행자의 신용상태저하 등으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거래가격에 불리한 영향). 시장 환경이 악화 될 경우 채권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투기등급의 채권에서 더욱 나타나기 쉽습니다.
ABS 및 MBS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ABS(Asset Backed Securities) 및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경우 mortgage, 중소기업대출, 매출채권 등 여러 가지 기초자산의 가치와 복잡한 법률적구조 및 운영과정에 내재된 위험요소들로부터 신용위험이 시현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신종자본증권(CoCo Bonds포함)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가 규제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치저하가 수반되는 후순위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채권의 일반적 위험 요인인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와 이자율 변동 뿐 아니라 전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추가적 위험이 있습니다.
Currency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화폐(Currency)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간주하여 여러나라의 화폐에 방향성 및 상대가치판단에 따라 큰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경우 투자신탁자산의 가치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다 익스포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며 위험예산을 분배합니다. 사전에 정의 된 위험 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전략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위험의 노출 정도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거래하는 등 다양한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투자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상충관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투자신탁에 특정투자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을 증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황상 가능한 경우, 금융상품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또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인 트레이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회전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 및 일정한 기타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TRS)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스왑계약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하위펀드는 해당 거래 관련 계약에 의거한 계약상 구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왑계약 거래상대방이 스왑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하위펀드가 계약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위펀드는 이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내 투자자산과 관련한 권리 행사 및 관련 계약상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p>총수익스왑(TRS) 위험</p>	<p>지급이 지연 또는 방지되는 위험을 부담하여 이로 인해 포지션 가치가 하락하고 수익이 감소하며 권리 행사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왑 거래상대방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채무의 발행인의 신용 위험에도 노출 됩니다. 총수익스왑 체결과 관련한 비용 및 통화 가치상의 차이로 인해 지수의 가치/총수익스왑의 기초자산의 기준 가치가 총수익스왑의 가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러시아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그 일부를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성과 더딘 경제 발전속도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위험과 특수한 고려사항들을 수반합니다. 러시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p>
<p>사이버보안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사이버 보안 사건이 수반하는 운영 및 정보 보안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건들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특정 위험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p>
<p>자금송환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신흥시장 및 프런티어시장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신흥시장 및 프런티어시장(신흥 시장 중에서도 가장 개발되지 않은 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이용가능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유동성 감소, 거래정지 혹은 시장 상황(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증가로 인해 다른 지역의 증권 보다 높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흥시장 및 프런티어시장은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 시장들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며, 일부 시장들은 현재 규제시장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포트폴리오의 거래, 청산 및 보관 서비스들에 더 큰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p>
<p>신용부도스왑(CDS)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s)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와 같이 스프레드 위험, 부도 위험, 유동성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 때와 달리 거래상대방 위험, 트리거 조항에 따른 크레딧 이벤트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됩니다.</p>
<p>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p>	<p>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자산양도자, 종개인 혹은 딜러 등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약정이나 거래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투자자산의 가격변동, 부실화 및 신용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산의 매입가 수준이 액면가 대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자산매입 시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가치평가 또는 매각 시점에 가격이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또한, 투자한 투자자산의 부실화 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위펀드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처리 될 수 있습니다.</p>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성과 보수 및 선취수수료 적용 펀드 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운용보수 이외에 외국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부과되는 선취수수료와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p>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성과 보수 및 선취수수료 적용 펀드 투자 위험	<p>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부과되는 선취수수료 차감으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가 성과보수의 수취를 위하여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일반 펀드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의 위험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투기등급 이하의 신용상태를 포함하고 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신용 위험에 노출됩니다.</p> <p>투자부적격채권은 투자적격채권보다 더 높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일드 채권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더 큰 폭의 가치하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p> <p>채권의 낮은 신용등급은 발행인의 재무 상황의 불리한 변경이나 금리 상승이 채권 보유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적격채권에 비해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에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특히, 하이일드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p>
신용등급 하락위험	<p>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인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차익 거래 위험	<p>차익 거래는 시장, 업종, 증권 등 투자대상 간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차익 거래의 투자 결과가 의도와 달리 나타날 경우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법률, 조세 및 규제 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국가의 증권법, 세법 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변화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또는 투자 및 거래 전략의 효율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법률적 위험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운용회사는 규제 제한 규정이나 투자 정책 및 투자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제 또는 법의 변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투자 방침과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자산배분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펀드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투자자산 집중 위험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지역, 국가, 업종에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은 시장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p>
운용인력 관련위험	<p>본 투자신탁의 성과는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를 운용하는 핵심 인력 및 그 대체인력들이 보유한 운용 능력 및 전문성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운용 인력이 시장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이 좋은 경우에도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p>

<p>운용인력 관련위험</p>	<p>습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중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를 운용하는 핵심인력들이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신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 핵심인력들이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만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업무들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해상충 및 투자성과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투자대상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기인한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종목 선택 전략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광범위한 증권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투자대상은 다양한 만기 및 종류의 채권(국채, 회사채 등), 주식, 장내외파생상품 및 단기금융시장증권을 포함하며 다양한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이러한 다양한 투자대상 및 전략으로 인하여 시장, 유동성, 신용, 환율 및 레버리지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운용회사는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하고 있지만 (1) 자산간 상관관계의 변화 등을 초래하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 (2) 부적절한 시장대응 (3) 리스크관리기법상의 실패 (4) 시스템의 오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신흥국 시장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중 일부는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거래 시장의 복잡성,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선진 시장의 증권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이 더 클 수도 있고, 환매가 정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흥 시장 국가의 회계 기준의 경우 선진국 대비 엄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시장의 기업들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일반적으로 선진국 시장 대비 적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p>
<p>전환사채 증권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증권으로써 관련된 위험 및 전환증권으로써 가지는 특수한 위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흔히 발행인이 증권 환매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상환(Call)조건으로 발행되며, 이로 인해 펀드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하에서 증권을 환매, 전환 또는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전환사채는 발행인의 단독 재량에 따른 선택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므로 조기상환일에 환매되거나, 조기상환시점에 연장될 것이라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조기 상환일 또는 어떠한 일자에도 예상한 투자 원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주식 투자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의 고유위험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변동성이 더 높고 유동성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p>
<p>상관관계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차별화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선별적인 투자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더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엠프렐라펀드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엠프렐라 펀드의 sub fund로써 룩셈부르크 법 상 다른 sub</p>

(umbrella fund)	fund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지만 엄브렐라 펀드가 하나의 Entity 이기 때문에 다른 관할권 (jurisdiction)에서는 그러한 책임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펀드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인하여 투자자산 가격의 작은 변동이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중개인에게 담보나 증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증거금으로 중개인들에게 예약된 자산은 별도 관리계정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인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중개인이 고유 목적을 위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펀드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및 워런트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신주인수권 및 워런트와 같은 주식연계증권 및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와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위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략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일부 상품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포지션의 가치 하락이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 환율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에서 편입한 통화가 준거 통화 대비 절하될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이 준거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투자는 해당 통화의 준거 통화 대비 변동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증권 대여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증권대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회수 지연 및 불능과 관련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증권의 차주가 재정적으로 파산하거나 거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가 청구될 것이지만,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금 송환불능의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위험	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펀드는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한 증권이 수반하는 경제적 위험 및 보상을 유지하므로, 증권 가치보다 높은 사전 결정 가격으로 환매해야 하는 경우 시장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의해 수령한 현금담보를 재투자할 경우 그러한 투자로 인해 시장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투자에 따르는 위험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인 중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화 환전, 해외 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인 중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화 환전, 해외 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중국투자자에 따르는 위험

가. 중국 통화와 관련된 위험: 중국 본토의 통화인 위안화 (“CNY”)는 자유롭게 전환하기 어려운 통화이며, 중국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과 송환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투자 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Y를 환전하는 것은 역외 위안화 (“CNH”) 환율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CNH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발표하는 변동환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NH의 가치는 CNY의 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후강통/선강통: 하위펀드는 후강통 및 선강통 제도(“후강통 및 선강통”)를 통하여 중국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은 홍콩과 상해/선전 증권거래소 간의 상호 주식 시장 접근성 확립을 위해 개발한 증권거래 및 청산 결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매거래 정지 등의 규정 및 제한으로 보유하고 있는 A주식 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후강통 및 선강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나 거래소에서 장래 후강통 및 선강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에 하위펀드에서 투자한 중국 A주식과 관련한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해당 주식을 시의적절하게 처분할 능력을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투자한도 (쿼터) 위험: 일간 쿼터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추가적인 매수 주문이 바로 중단되며, 남은 기간 동안 추가 매수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매매일자와 시간의 차이: 홍콩과 중국본토의 휴일이나 기상악화로 인한 임시 휴일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후강통 및 선강통을 통한 주식의 교차매매와 그와 관련된 결제 역시 홍콩과 중국본토 모두 영업일인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 날 수 있어도, 홍콩에서의 중국 A주 관련 거래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 적격 주식 취소와 거래 제한과 관련된 위험: 후강통 및 선강통을 통한 교차 매매가 가능했던 일부 주식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차매매를 통해 매매한 주식의 소유권은 해당 주식이 중국 A주식 지수에서 빠지는 경우, 위험 경고를 받는 경우, 교차 매매가 중지되는 경우, 또는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교차매매가 가능한 주식이 일정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는 불가합니다.

바. 거래비용: 중국 A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후강통 및 선강통을 통한 교차 매매의 경우, 배당세 및 중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세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 중국예탁결제원 관련 위험: 중국예탁결제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국증권감독관리 위원회 (“CSRC”)가 설립하였으며,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예탁결제원이 파산하게 된다면, 홍콩 증권거래소는 선의로,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교차매매로 발행된 주식과 금전 회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참여자들에게 감독권자가 승인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아. 홍콩 증권거래소 관련 위험: 홍콩 증권거래소가 채무이행에 실패하거나 지연하게 되면, 교차 매매를 이용한 거래에서 결제 실패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교차 매매와 관련한 주식 소유권 위험: 교차매매를 통해 매매한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 각종 규제에 의해 소유권의 제한과 지분 공시 등의 의무를 지니지만, 중국기업과 분쟁 발생시 중국법정에서 소유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 부분은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차. 중국 세제상의 위험: 중국 과세당국은 이익에 대하여 소급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p>중국투자자에 따르는 위험</p>	<p>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이 투자 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과세당국이 소급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과세당국이 세금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식예탁증서(DR) 투자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해외투자 시에 주식예탁증서 (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 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정치적 위험: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p> <p>*기타 변수: 양 국가간의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p>
<p>결제와 보관관련 위험</p>	<p>신흥국시장이나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거래의 결제, 청산 및 등록의 운영이나 이행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또한 증권 시스템의 지불 능력에 대한 보증이 없으며, 증권 시스템이 보관 회사나 증권보유자 등록을 적절히 유지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현지 중개인이 결제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 해당 자산은 그 시기 동안에 중개인의 작위, 부작위 및 지급능력으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 보관서비스는 아직 잘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하위펀드가 그 자산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투자 실행 및 투자자산 보유로 인하여 하위펀드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증권시장에서보다 클 수 있습니다.</p>
<p>REIT 투자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인 REIT는 직접 투자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REIT는 공여된 신용의 우량성과 금리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REIT의 운용기법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수의 부동산에 내재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차주의 채무 불이행 및 자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장외 파생 거래 위험</p>	<p>장외파생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거래 상대방간의 협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일 가격변동 제한 및 투기 포지션 제한 등의 규제를 적게 받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부족 및 하락은 투자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를 처분하는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결제불이행 위험</p>	<p>장외 거래에서 승인된 거래 상대방이 거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유동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신탁이 해당 종목의 공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p>
<p>사이버보안 위험</p>	<p>본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사이버 보안 사건이 수반하는 운영 및 정보 보안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건들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특정 위험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p>

사모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은 사모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모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공모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보다 발행요건이 간단하며 발행후 유동성이 매우 낮아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채권에 대한 투자는 만기보유를 가정할 수 있으며 투자이후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등 위험요인이 예상되더라도 매각 등을 통한 선제적인 위험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FX, 금리, 크레딧 등 다양한 전략에 위험을 배분하여 투자합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전략별 투자 비중은 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위험에 대한 노출로 인해 시장보다 더 빠르게 투자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더 큰 위험 및 가격변동성에 노출됩니다. 중소형주의 경우 발생회사의 신용상태 및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 등으로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는 협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경우 매수자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투자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협상을 통한 거래일 경우 재판매가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차 시장의 유동성이 작을 수도 있으며, 가격 변동이 일반 주식과 비교하여 크거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SG 집합투자기구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ESG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략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이하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ESG 평가결과의 변동 혹은 환경,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불리한 영향 등으로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p>환매연기위험</p>	<p>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p>
<p>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오퍼레이션 위험</p>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p>대량환매위험</p>	<p>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펀드규모위험</p>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 가입 클래스 변경 위험</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를 더 이상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신탁이 가입한 클래스를 다른 적절한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격, 보수체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성과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p>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 가입 클래스 해지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가입클래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상위펀드에 대한 인가의 종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청산 등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가입클래스가 해지되어 예기치 않은 비용의 지출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증권 대차거래 위험</p>	<p>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준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14.65%이며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97.5% VaR 모형을 사용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한 후, 신용, 유동성, 환율 등의 위험을 반영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위험등급 변경내역>

투자위험등급	기간	변경사유
3 등급	2020.09-2023.09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3 등급	2023.09-2025.09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4 등급	2025.09-현재	실제 수익률 변동성 축소에 따라 위험등급 하향

※ 상기 기간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펀드결산일 기준(해당기간 내 각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 측정)의 기간을 의미하며, 변경된 위험등급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의 결과계산에 따라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97.5% VaR 모형*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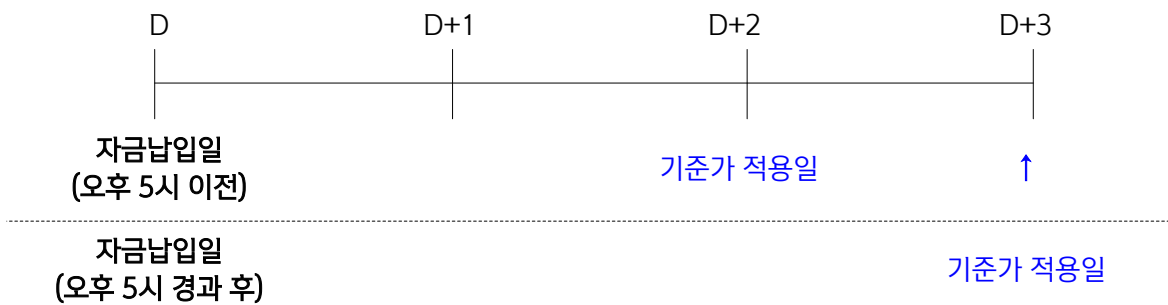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 17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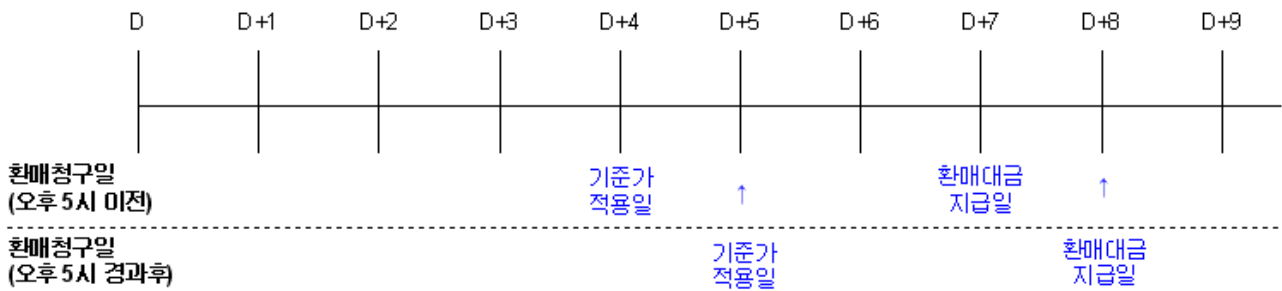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D+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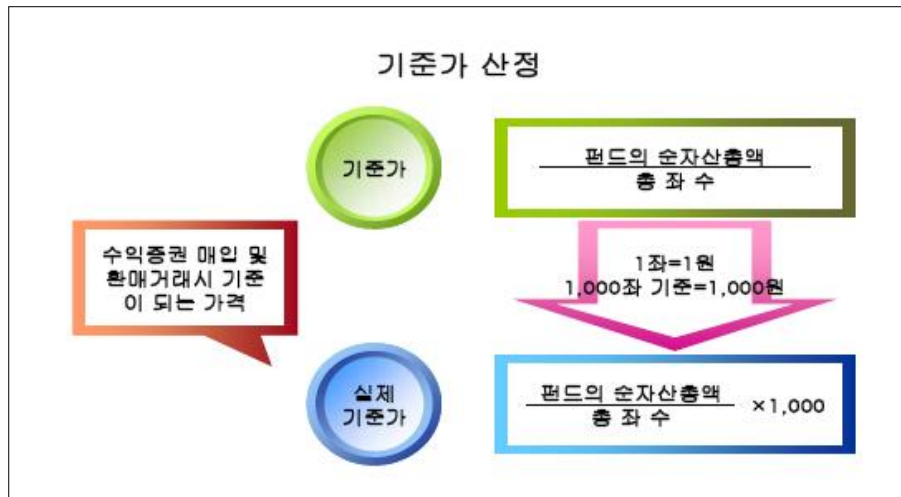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평가원칙
시가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2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공표하는 가격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4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5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6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7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8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9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퇴직자금으로서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u>납입금액의 1.000% 이내</u>	-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u>납입금액의 0.500% 이내</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u>납입금액의 0.700% 이내</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C-g)	-	-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기관 (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 (C-s)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u>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이내</u>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 금(S-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 금(S-R)	-	-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보수	총 보수	(동종 유형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비용 (피투자집 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u>0.500</u>	<u>0.500</u>	<u>0.030</u>	<u>0.025</u>	<u>1.055</u>	<u>0.860</u>	0.0082	<u>1.0632</u>	<u>1.6087</u>	-
수수료선취-온라인(A- e)	<u>0.500</u>	<u>0.250</u>	<u>0.030</u>	<u>0.025</u>	<u>0.805</u>	<u>0.580</u>	0.0077	<u>0.8127</u>	<u>1.3582</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u>0.500</u>	<u>0.350</u>	<u>0.030</u>	<u>0.025</u>	<u>0.905</u>	-	-	<u>0.905</u>	<u>1.450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u>0.500</u>	<u>1.000</u>	<u>0.030</u>	<u>0.025</u>	<u>1.555</u>	<u>1.210</u>	0.0062	<u>1.5612</u>	<u>2.1067</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u>0.500</u>	<u>0.500</u>	<u>0.030</u>	<u>0.025</u>	<u>1.055</u>	<u>0.750</u>	0.0084	<u>1.0634</u>	<u>1.6089</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u>0.500</u>	<u>0.700</u>	<u>0.030</u>	<u>0.025</u>	<u>1.255</u>	-	-	<u>1.255</u>	<u>1.800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기관(C-i)	<u>0.500</u>	<u>0.030</u>	<u>0.030</u>	<u>0.025</u>	<u>0.585</u>	-	-	<u>0.585</u>	<u>1.130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C-p)	<u>0.500</u>	<u>0.720</u>	<u>0.030</u>	<u>0.025</u>	<u>1.275</u>	-	-	<u>1.275</u>	<u>1.8205</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C-pe)	<u>0.500</u>	<u>0.360</u>	<u>0.030</u>	<u>0.025</u>	<u>0.915</u>	-	-	<u>0.915</u>	<u>1.460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C-r)	<u>0.500</u>	<u>0.750</u>	<u>0.030</u>	<u>0.025</u>	<u>1.305</u>	-	0.0079	<u>1.3129</u>	<u>1.8584</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C-re)	<u>0.500</u>	<u>0.370</u>	<u>0.030</u>	<u>0.025</u>	<u>0.925</u>	-	0.0085	<u>0.9335</u>	<u>1.479</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u>0.500</u>	<u>0.010</u>	<u>0.030</u>	<u>0.025</u>	<u>0.565</u>	-	-	<u>0.565</u>	<u>1.110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u>0.500</u>	-	<u>0.030</u>	<u>0.025</u>	<u>0.555</u>	-	-	<u>0.555</u>	<u>1.1005</u>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u>0.500</u>	<u>0.140</u>	<u>0.030</u>	<u>0.025</u>	<u>0.695</u>	-	-	<u>0.695</u>	<u>1.2405</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u>0.500</u>	<u>0.120</u>	<u>0.030</u>	<u>0.025</u>	<u>0.675</u>	-	-	<u>0.675</u>	<u>1.2205</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R)	<u>0.500</u>	<u>0.100</u>	<u>0.030</u>	<u>0.025</u>	<u>0.655</u>	-	-	<u>0.655</u>	<u>1.2005</u>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종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금융비용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 2024.09.17 - 2025.09.16]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연율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두자산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두자산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54550%](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 국내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9) 이 투자신탁은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집합투자재산으로 평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07	319	435	680	1,38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2	430	603	966	1,987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33	219	308	499	1,04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8	330	478	790	1,67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62	257	357	567	1,17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7	369	526	857	1,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59	323	493	850	1,85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4	434	660	1,132	2,4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08	221	338	586	1,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4	333	508	875	1,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8	261	398	689	1,51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3	372	567	975	2,1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0	122	187	326	73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5	235	359	622	1,3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30	265	404	699	1,537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5	376	573	985	2,1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93	191	292	506	1,12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	303	462	797	1,7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34	272	416	719	1,57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9	384	584	1,005	2,1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95	194	298	516	1,14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1	306	468	807	1,764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C-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8	118	181	315	707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3	231	353	612	1,3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7	116	178	310	69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9	350	606	1,33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1	145	222	387	86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8	394	681	1,4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9	141	216	376	840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4	254	387	670	1,4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7	137	210	365	816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	249	381	660	1,45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상당히 낮아질 경우 해외 자산 매매 및 보관 등을 위한 기타 비용(해외보관대리인 비용, 해외거래 예약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규약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종류 수익증권별 후원기금을 조성하며,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보수율에 아래의 기금 조성율을 반영하여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방법으로 종류 수익증권별로 조성된 기금을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1.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등)
2.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

라.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 위의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분배금을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지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지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및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

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2024.09.17 - 2025.09.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 기(2023.09.17 - 2024.09.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 기(2022.09.17 - 2023.09.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 재무상태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5.09.16)	(2024.09.16)	(2023.09.16)
운용자산	12,736,319,064	15,587,485,190	17,169,943,986
증권	11,922,159,603	14,745,524,393	16,447,514,122
파생상품	97,255,204	164,840,234	-395,461,217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716,904,257	677,120,563	1,117,891,08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13,133,844	89,599,050	393,238,154
자산총계	12,849,452,908	15,677,084,240	17,563,182,14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85,801,445	238,034,810	179,697,836
부채총계	285,801,445	238,034,810	179,697,836
원본	10,823,815,221	14,157,189,460	17,433,477,297
수익조정금	-223,118,229	38,763,785	245,768,707
이익잉여금	1,962,954,471	1,243,096,185	-295,761,700
자본총계	12,563,651,463	15,439,049,430	17,383,484,304

통합 손익계산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24.09.17-2025.09.16)	(2023.09.17-2024.09.16)	(2022.09.17-2023.09.16)
운용수익	984,681,187	1,651,352,676	493,860,682
이자수익	7,095,414	10,365,508	22,105,36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977,585,773	1,640,987,168	471,755,31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21,827,226	144,808,685	161,078,154
관련회사 보수	121,827,226	144,808,685	161,078,15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653,629	13,761,837	1,801,224
당기순이익	851,200,332	1,492,782,154	330,981,304

매매회전율	0	0	0
-------	---	---	---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이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이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 (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주5)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6) 기타수익에 포함되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5기 0백만원, 4기 0백만원, 3기 0백만원 발생)
- (주7)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5기 0백만원, 4기 0백만원, 3기 0백만원 발생)
- (주8)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모타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백만원	0	0 백만원	0 백만원	0.00	32.00

(주9)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구분	당기(2024.09.17 - 2025.09.16)			전기(2023.09.17 - 2024.09.1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 대차, 콜 등)						
합계	0	0	0	0	0	0

나. (통합)재무상태표

통 합 재 무 상 태 표

[단위:원]

과 목	제5기(2025.09.16)		제4기(2024.09.16)		제3기(2023.09.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718,285,015		679,965,960		1,123,828,435
1. 현금및현금성자산	718,285,015		679,965,960		1,123,828,435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골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1,920,778,845		14,742,678,996		16,441,576,768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1,922,159,603		14,745,524,393		16,447,484,120	
4. 기타유가증권	-1,380,758		-2,845,397		-5,907,352	
파생상품		97,255,204		164,840,234		-395,461,217
1. 파생상품	97,255,204		164,840,234		-395,461,217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13,133,844		89,599,050		393,238,15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30,774,833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30,956		387,316		612,391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13,002,888		89,211,734		61,850,930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2,849,452,908		15,677,084,240		17,563,182,140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85,801,445		238,034,810		179,697,83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25,772,530		178,250,406		123,570,582	
4. 수수료미지급금	60,028,915		59,784,404		56,127,25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85,801,445		238,034,810		179,697,836
자 본						
1. 원 본	10,823,815,221		14,157,189,460		17,433,477,29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739,836,242		1,281,859,970		-49,992,993	
(발행좌수 당기: 10,823,815,221 좌						
전기: 14,157,189,460 좌		1,962,954,471		1,243,096,185		-295,761,700
전전기: 17,433,477,297 좌)		수익조정금		38,763,785		245,768,707
(기준가격 당기: 1,221.53 원						
전기: 1,137.01 원						
전전기: 1,029.89 원)						
자 본 총 계		12,563,651,463		15,439,049,430		17,383,484,30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849,452,908		15,677,084,240		17,563,182,140

다. (통합)손익계산서

통 합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5기(2024.09.17-2025.09.16)		제4기(2023.09.17-2024.09.16)		제3기(2022.09.17-2023.09.1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095,414		10,365,508		22,105,363
1. 이 자 수 익	7,095,414		10,365,508		22,105,363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917,271,592		3,951,445,541		4,495,585,301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83,081,544		1,845,647,212		2,001,716,829	
5. 외환거래/평가차익	2,608,769,677		1,860,073,939		2,444,976,207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25,420,371		245,724,390		48,892,26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939,685,819		2,310,458,373		4,023,829,982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2,881,719,901		2,069,977,625		2,691,348,288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57,965,918		240,480,748		1,332,481,694	
운 용 비 용		133,480,855		158,570,522		162,879,378
1. 운용수수료	62,840,086		74,573,218		83,404,007	
2. 판매수수료	54,798,628		65,264,817		72,114,936	
3. 수탁수수료	4,188,512		4,970,650		5,559,21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1,653,629		13,761,837		1,801,22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851,200,332		1,492,782,154		330,981,30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78641432		0.105443397		0.01898538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2022.09.17 - 2023.09.16	4	4	0	0	0	0	4	4
	2023.09.17 - 2024.09.16	4	4	0	0	1	1	4	4
	2024.09.17 - 2025.09.16	4	4	0	0	1	2	2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2.09.17 - 2023.09.16	6	6	2	2	3	3	5	5
	2023.09.17 - 2024.09.16	5	5	1	1	3	3	3	4
	2024.09.17 - 2025.09.16	3	4	0	0	2	2	2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22.09.17 - 2023.09.16	1	1	0	0	0	0	1	1
	2023.09.17 - 2024.09.16	1	1	0	0	1	1	1	1
	2024.09.17 - 2025.09.16	1	1	0	0	0	1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2.09.17 - 2023.09.16	22	21	6	6	7	6	21	21
	2023.09.17 - 2024.09.16	21	21	3	3	9	9	15	16
	2024.09.17 - 2025.09.16	15	16	1	1	6	6	10	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2022.09.17 - 2023.09.16	3	3	1	1	1	1	2	2
	2023.09.17 - 2024.09.16	2	2	0	0	0	0	2	2
	2024.09.17 - 2025.09.16	2	2	0	0	0	0	2	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2022.09.17 - 2023.09.16	159	155	48	47	67	66	139	139
	2023.09.17 - 2024.09.16	139	139	30	31	52	54	117	128
	2024.09.17 - 2025.09.16	117	128	25	27	51	55	91	10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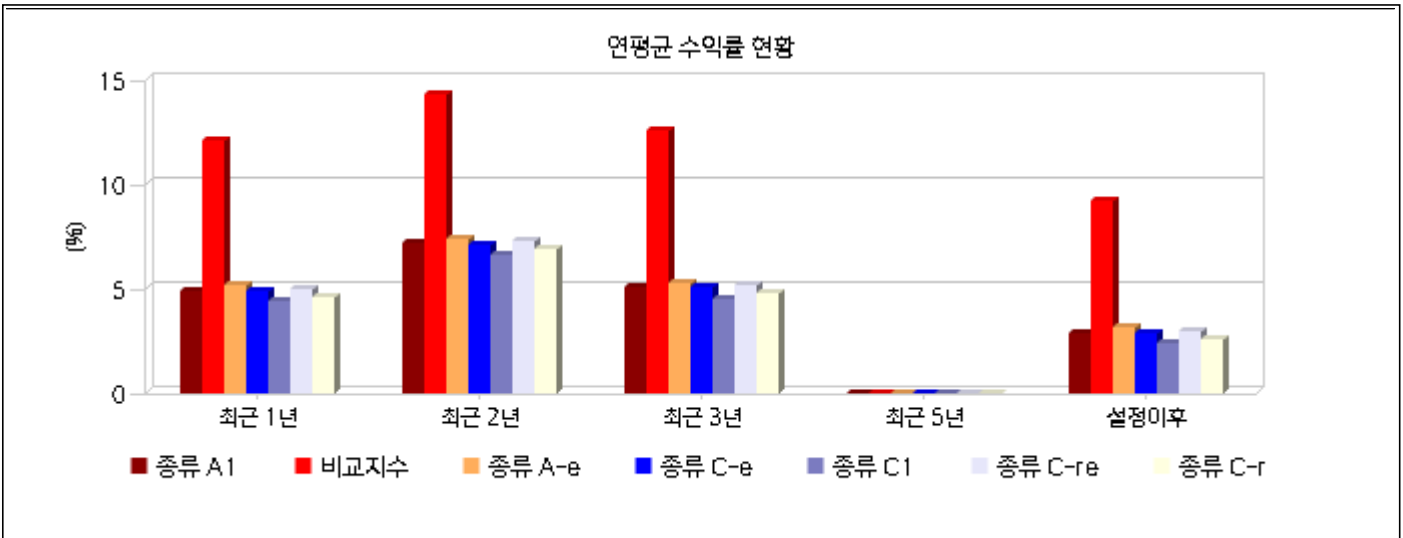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25.08.31 현재/단위:%]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9.01 ~ 2025.08.31	2023.09.01 ~ 2025.08.31	2022.09.01 ~ 2025.08.31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4.91	7.17	5.08	-	2.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5.17	7.42	5.33	-	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4.39	6.63	4.56	-	2.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90	7.15	5.07	-	2.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4.64	6.89	4.81	-	2.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5.03	7.29	5.21	-	2.96
비교지수(%)	12.08	14.30	12.64	-	9.25
수익률 변동성(%)	7.95	7.97	8.70	-	9.91

- (주1) 비교지수 : MSCI The World Index(USD)*60%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35% + 콜금리*5%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6)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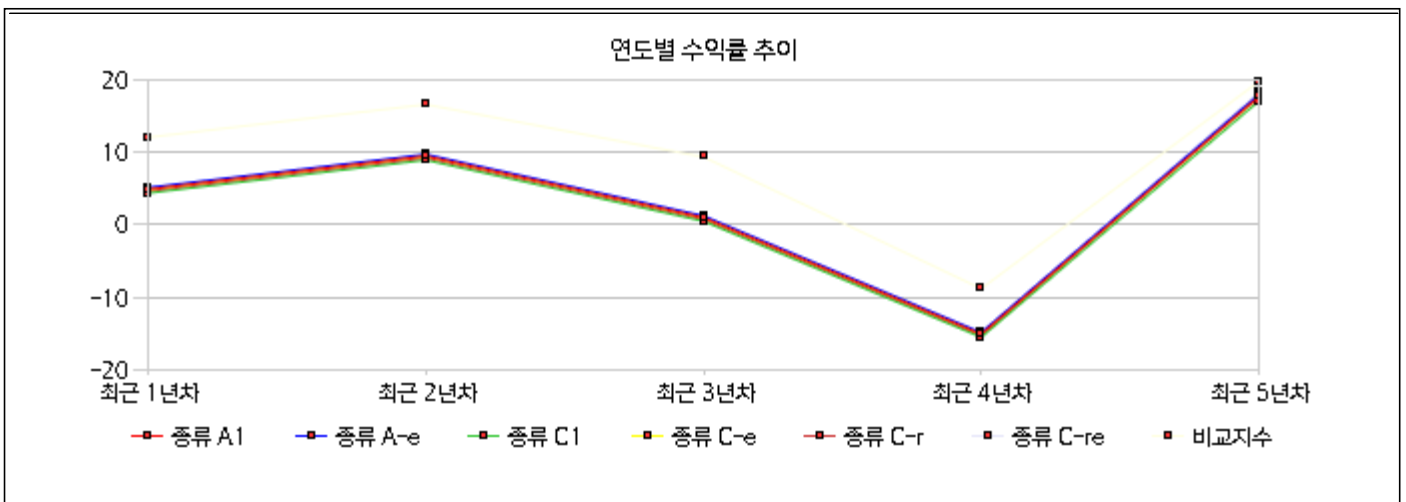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2025.08.31 현재/단위:%]

구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4.09.01 ~ 2025.08.31	2023.09.01 ~ 2024.08.31	2022.09.01 ~ 2023.08.31	2021.09.01 ~ 2022.08.31	2020.09.17 ~ 2021.08.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4.91	9.50	1.02	-15.07	17.66
수수료선취-온라인(A-e)	5.17	9.75	1.27	-14.83	17.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4.39	8.95	0.52	-15.49	17.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90	9.48	1.02	-15.05	17.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4.64	9.22	0.77	-15.27	17.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5.03	9.62	1.15	-14.93	18.29
비교지수(%)	12.08	16.62	9.38	-8.79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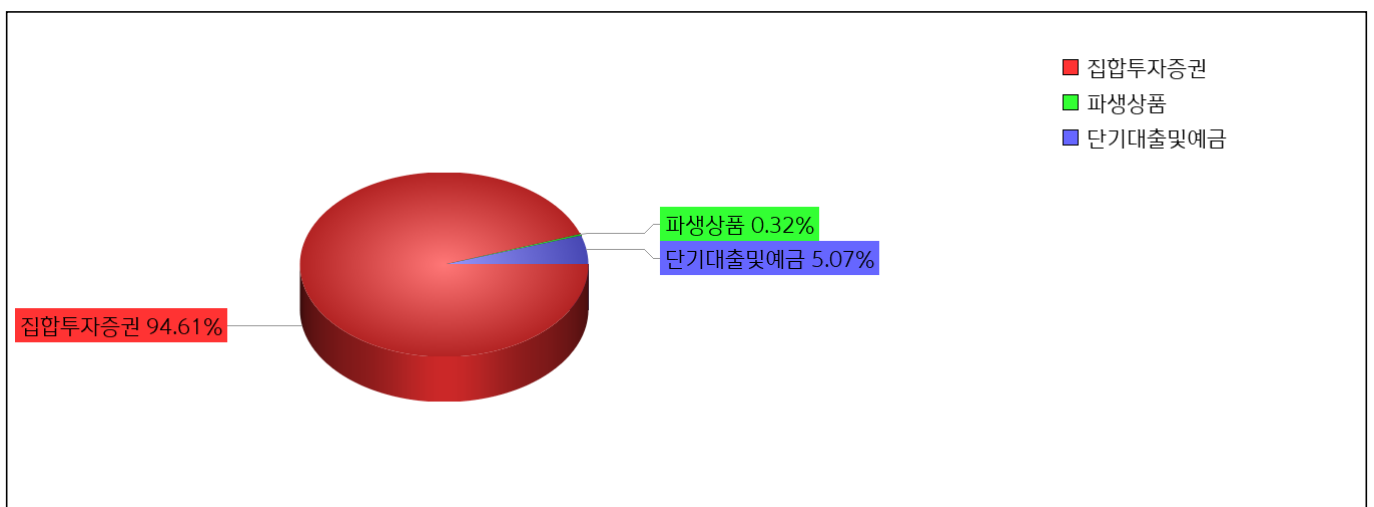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MSCI The World Index(USD)*60% +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1-3 Y)*35% + 콜금리*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세전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연환산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100.00)
USD	0	0	0	95	0	0	0	0	0	4	0	99
	(0.00)	(0.00)	(0.00)	(95.92)	(0.00)	(0.36)	(0.00)	(0.00)	(0.00)	(3.72)	(0.00)	(100.00)
EUR	0	0	0	26	0	0	0	0	0	2	0	28
	(0.00)	(0.00)	(0.00)	(93.27)	(0.00)	(0.18)	(0.00)	(0.00)	(0.00)	(6.55)	(0.00)	(100.00)
합계	0	0	0	121	0	0	0	0	0	6	0	128
	(0.00)	(0.00)	(0.00)	(94.61)	(0.00)	(0.32)	(0.00)	(0.00)	(0.00)	(5.07)	(0.0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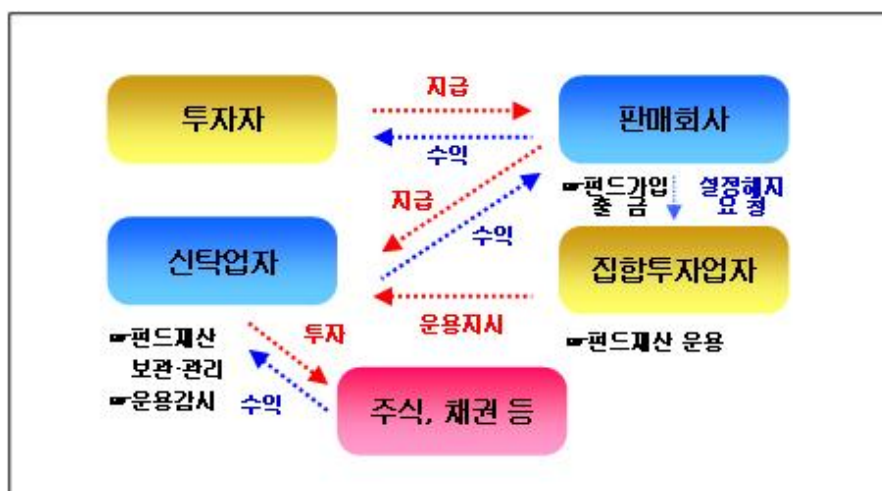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라. ESG 관련 운용실적

당 투자신탁은 재간접 형태로서 ESG 관련 운용 실적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나, 투자신탁 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은 ESG 전략을 통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장기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당 투자신탁 내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인 Janus Henderson Horizon Global Sustainable Equity Fund IU2 EUR 클래스 펀드는 SFDR (EU 금융상품 공시제도)상 Article 9에 해당하는 지속가능 금융상품이며, 출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환산 13.13%를 기록해 비교지수(MSCI World Index, +11.73%) 대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시장과 투자대상 펀드 회사의 상황 및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상기 예시 펀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 사 연 혁	2022.01 신한자산운용(주)이 신한대체투자운용(주) 흡수합병 2021.01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 본 금	887억원
주 요 주 주 현 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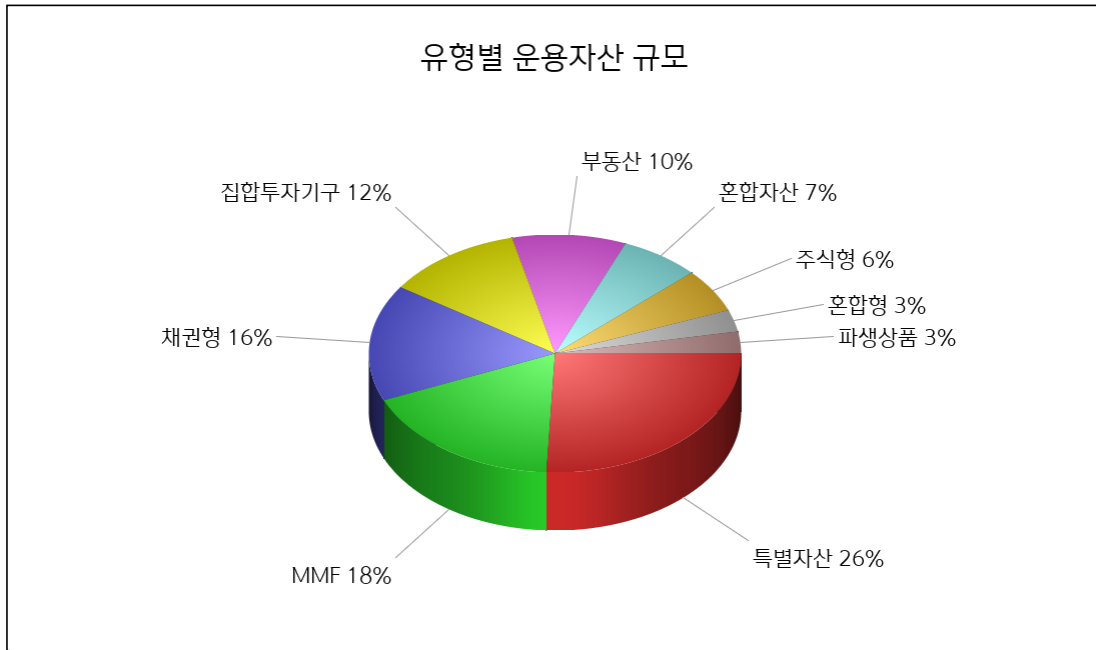
구분	제29기 2024년12월말	제28기 2023년12월말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45,403	17,216
유가증권	363,342	336,33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5,546	4,685
파생상품자산	41	444
기타자산	46,837	44,982
유형자산	42,150	5,587
자산총계	503,319	409,246
예수부채	200	
차입부채	528	0
기타부채	186,263	134,031
부채총계	186,991	134,031
자본금	88,667	88,667
자본잉여금	59,980	59,980
자본조정	304	3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75	-884
이익잉여금(결손금)	168,752	127,149
자본총계	316,328	275,216
부채와자본총계	503,319	409,246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29기 (24.01.01- 24.12.31)	제28기 (23.01.01- 23.12.31)
영업수익	241,409	171,145
영업비용	156,569	103,758
영업이익(손실)	84,840	67,387
영업외수익	572	949
영업외비용	1,793	60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	83,618	67,727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 용	17,615	16,456
계속사업이익(손실)	66,003	51,272
중단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66,003	51,272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8.31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45,189	17,666	108,175	83,205	17,800	70,529	179,043	49,758	124,313	695,67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칠패로37 (대표전화 : 02) 2004-0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sbc.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 2180-0400)
인 터 넷 홈 페 이 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마. ESG 관련 평가회사에 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 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대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집합투자규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조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4)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

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4.09.01 - 2025.08.31)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2024.09.01 - 2025.08.31)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